

2020.6.10.~6.29./ 20일간

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| 의안명 | 심사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019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| 원안가결 |
| 2019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| 원안가결 |
| 2019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원안가결 |
|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원안가결 |
|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| 원안가결 |

주요 내용

1. 2019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(예비비 지출, 기금) 승인의 건

- 제출일자 : 2020. 6. 5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주요내용

가. 세입·세출결산

- 세입·세출결산 내역

(단위:원)

| 회계별 | 예산현액 | 세입결산액 | 세출결산액 | 세계잉여금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계 | 567,120,118,720 | 582,527,581,304 | 419,352,187,890 | 163,175,393,414 |
| 일반회계 | 551,505,055,780 | 566,624,412,814 | 410,883,057,520 | 155,741,355,294 |
| 특별회계 | 15,615,062,940 | 15,903,168,490 | 8,469,130,370 | 7,434,038,120 |

- 세계잉여금 내역

(단위 : 원)

| 회계별 | 계 | 명사이월 | 사고이월 | 계속비이월 | 보조금잔액 | 순세계잉여금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계 | 163,175,393,414 | 55,834,315,110 | 23,261,012,700 | 12,219,845,140 | 7,211,179,094 | 64,649,041,370 |
| 일반회계 | 155,741,355,294 | 55,804,315,110 | 23,098,785,060 | 12,219,845,140 | 7,180,698,044 | 57,437,711,940 |
| 특별회계 | 7,434,038,120 | 30,000,000 | 162,227,640 | - | 30,481,050 | 7,211,329,430 |

나. 기금결산

- 2019년말 기금 현재액은 7,969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- 사회복지기금 : 3,443백만원
- 체육진흥기금 : 1,611백만원
- 재난관리기금 : 1,730백만원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: 1,115백만원
- 식품진흥기금 : 70백만원

다. 예비비지출

-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(일반회계) : 7,976,백만원
- 예비비지출 결정액(일반회계) : 549,백만원
- 예비비 지출액 : 526백만원
- 집행잔액 : 18백만원
- 주요 지출내역
 - 가축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추진 : 58,889,000원
 -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 : 166,183,780원
 - 태풍 피해복구 지원(13호 링링, 17호 타파, 18호 미탁) : 300,495,040원

라. 채권 결산

- 2019년말 채권 현재액은 7,97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 - 일반회계 : 7,730백만원
 - 특별회계 : 234백만원
 - 사회복지기금 : 6백만원

마. 채무 결산

- 2019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임.

바. 공유재산 결산

- 2019년말 공유(균유)재산 현재액은 865,793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| |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· 토지 | : | 25,467천 m ² | 285,273백만원 |
| · 건물 | : | 179천 m ² | 212,195백만원 |
| · 입목죽 | : | | 4,859백만원 |
| · 공작물 | : | | 352,751백만원 |
| · 기계기구 | : | | 5,415백만원 |
| · 무체재산권 | : | | 4,662백만원 |
| · 용익물건 | : | | 484백만원 |
| · 회원권 | : | | 154백만원 |

사. 물품 결산

○ 2019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722개, 6,14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- 전년도말 : 650개 5,509백만원
- 신규취득 등 : 96개 828백만원
- 매각 : 24개 191백만원

아. 재무회계 결산

○ 재정상태보고서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자 산(A) | 부 채(B) | 순자산(A-B)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2019년도 | 2,472,179 | 12,704 | 2,459,475 | |

○ 재정운영보고서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수 익(A) | 비 용(B) | 운영차액(A-B)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2019년도 | 416,454 | 322,276 | 94,178 | |

○ 순자산변동보고서

(단위 : 백만원)

| 기초순자산 | 운영차액 | 순자산증가 | 순자산감소 | 기말순자산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2,361,126 | 94,178 | 5,202 | 1,031 | 2,459,475 |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0. 6. 5.
- 제안자 : 장성군수(문화관광과)
- 제안이유
 -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과 입장객의 적정수 유지를 위해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- 주요내용
 - 장성군 문화·관광 시설에 “장성호 수변길” 추가(안 제2조제1호)
 -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징수근거 등 신설(안 제47조 ~ 제54조)
 - 입장 및 매표시간 신설
 - 입장료 기준액 : 일반 3,000원/1인(일정액 상품권 환급), 군민 무료
 - 평일 무료/주말·공휴일 유료, 감면내용, 환불사항 등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0. 6. 5.
- 제안자 : 장성군수(문화관광과장)
- 제안이유
 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」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코자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
 - 감사원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“사용료 감면” 등 조항을 개정
 -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적극적 행정을 저해하는 “원칙적 사용료 반환 금지” 규정을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개정

■ 주요내용

-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신설 및 정비(안 제4조제3항, 제5조제6,7호)
 -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공평하게 사용기간을 배정하는 규정 신설
 - (현행) 사용순위 조항에 체육행사와 경기연습 구분이 모호하게 규정
 - (개선) 체육행사와 경기연습을 구분하고 경기연습을 체육행사보다 하위 사용순위로 개정
-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신설(안 제7조제3,4항, 제8조제4항, 제10조제1항, 제22조제4항)
 -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사용자에 대한 시설 사용 제한 기간 설정, 체육시설 활용실태 정기점검 의무, 홍보 목적의 부대시설 설치 금지,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시 일정기간 위탁 참여 제한 규정 신설
-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특혜를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정비(안 제16조, 제17조제1항)
 - (현행) “법령상 근거없이 사용료 감면 대상 설정”, “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일부 경우에만 사용료 반환”
 - (개선) 상위 법령에 맞게 사용료 감면 대상 정비, 적극적으로 사용료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 예시 규정을 신설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0. 6. 5.
- 제안자 : 장성군수(문화관광과장)
- 제안이유
 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」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코자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

- 감사원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“사용료 감면” 등 조항을 개정
-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적극적 행정을 저해하는 “원칙적 사용료 반환 금지” 규정을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개정

■ **주요내용**

-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신설(안 제4조제4항, 제5조)
 -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공평하게 사용기간을 배정하는 규정, 공공 목적에 맞는 사용허가 우선순위 기준 신설
-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신설(안 제4조제5항, 제7조제3,4항, 제11조)
 - 체육시설 활용실태 정기점검 의무,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사용자에 대한시설 사용 제한 기간, 홍보 목적의 부대시설 설치 금지 규정 신설
-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특혜를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정비(안 제7조제2항, 제9조, 제10조)
 - (현행) “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”, “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일부 경우에만 사용료 반환”, “법령상 근거없이 사용료 감면 대상 설정”
 - (개선) 사용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삭제, 적극적으로 사용료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 예시 규정을 신설, 상위 법령에 맞게 사용료 감면 대상 정비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‘조례 규제개선 사례집’ 권고사항 반영하고자 함.

■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

5. **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**제출일자** : 2020. 6. 5.
- **제 안 자** : 장성군수(일자리경제과장)
- **제안이유**

- 외부 방문객의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,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하여 장성 사랑상품권 발행 매체와 권면 금액을 다양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-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도입(안 제4조제3항)

(현행) :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·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(개정) :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·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 결제중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.

- 상품권 권면 금액 추가(안 제4조제4항)

(현행) :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1. 5천원권
2. 1만원권

(개정) : 상품권의 종류는 모바일상품권, 카드형상품권, 지류상품권으로 구분하며,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천원권
2. 2천원권
3. 3천원권
4. 5천원권
5. 1만원권
6. 전자적 자기적 기록에 의한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은 해당 매체에 기록된 금액으로 한다.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6.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원 조례 제정안

- 제출일자 : 2020. 6. 5.
- 제안자 : 장성군수(일자리경제과장)
- 제안이유
 - 목적,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 - 분야별 책무(안 제3조 ~ 제5조)
 - 군수, 금융기관, 군민
 - 피해방지 등 지원사업(안 제6조)
 - 피해방지 홍보 및 민관협력 등 피해방지사업
 - 협의회 설치 및 운영(안 제7조 ~ 제10조)
 - 협의회 설치 및 기능, 협의회 구성 및 임기, 협의회 운영 등
 - 수당 및 포상(안 제11조 ~ 제12조)
 - 협의회 참석자 수당 및 피해방지 기관·단체 포상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문서번호 | 의회사무과 - | 담당자 | 담 당 | 의회사무과장 | 의 장 |
| 보존기간 | | | | | |
| 결재일자 | 2020. 6. | | | | |
| 공개여부 | 공 개 | 협 조 | | | |

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